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제6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
-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
-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

나) 재직기간의 합산

- ①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[제65조(「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「군인연금법」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]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 받은 사람이 퇴직연금·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 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(이하 "반납금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.
-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 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⑤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) 지급제외대상

- 가)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
- 나)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)
 - 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
 - ②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 - ③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 -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※ 강등·정직 : 18개월, 감봉 : 12개월, 견책 : 6개월
 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상습폭행,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)이 지나지 않은 경우) 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)

-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- ⑥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
- ⑦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 하기로 예정된 사람
- ⑧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